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09. 04

정부·국회

(참고) 이정식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 화상 등 안전사고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당부
- 휴게시설, 외국인고용 등 50인 미만 사업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기업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과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에 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의 출입금지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16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 1 참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류형민 (044-202-7435)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17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 8월 23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 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②"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뒹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붙임1).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붙임3).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044-202-8938), 류채은(044-202-8942)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31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 기존에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32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 전년 동기 대비 29명 감소(△9.1%), 1분기에 이어 감소세 지속
- 제조업, 50인(억) 미만,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에서 주로 감소

2023년 2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284건)으로 전년 동기 318명(301건) 대비 29명(9.1%), 17건(5.6%) 감소

(업종별) ▲건설업은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 ▲제조업은 81명(80건)으로 19명 감소(13건 감소), ▲기타 61명(59건)으로 5명 감소(5건 감소)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179명(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명 감소(19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10명(109건)으로 11명 감소(2건 증가)

(유형별) 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1분기에 이어 1~2분기 누적치로도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에 따라 위험성평가 확산에 역량 집중 등이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또한, 매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한 결과,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모두 감소함

- 향후에도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49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 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후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5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1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801324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77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8/16, 경기 수원시] 사다리차 작업대가 비계를 충격하여 비계 위에 있던 작업자가 떨어짐
- [8/16, 광주 남구] 상가 건물 철거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대리석에 맞음
- [8/16, 전북 군산시] 건조로 보수를 위해 용접 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폭발
- [8/15, 전북 영암군] 선박블럭 탱크 용접부 기밀 검사 중 폭발로 인해 날아간 지그판에 맞음
- [8/16, 경기 양주시] 지게차와 옹벽 충돌하여 운전자 지게차에서 떨어짐
- [8/18, 경기 군포시] 이동 중 후진하는 화물차와 도크(Dock) 사이에 끼임
- [8/18, 충북 청주시] 옥상에서 배수로 균열 보수 작업 중 떨어짐(높이 45m)
- [8/18, 강원 강릉시] 떨어지는 별도목에 맞음
- [8/19, 충남 논산시] 작업발판 위에서 지붕 기와 교체 작업 중 떨어짐(높이 7.2m)
- [8/14, 충남 천안시] 지붕 상부에서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2.3m)
- [8/16, 경기 연천군]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 중 굴착면 바닥으로 떨어짐(1m)
- [8/22, 전남 광양시] 케이블 포설 작업 중 감전
- [8/22, 부산 수영구] 건물 7층에서 철거 작업 중 개구부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짐
- [8/23, 강원 강릉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전도되어 깔림
- [8/24, 충남 아산시] 석고보드 부착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
- [8/25, 경기 화성시] 폐오일탱크 게이지 교체를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탱크 폭발
- [8/25, 경기 화성시] 폐오일탱크 게이지 교체를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탱크 폭발
- [8/28, 대구 달성군] 파단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근로자가 맞음
- [8/16, 울산 북구] 천장 판넬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5m)
- [8/29, 경기 안산시] 핸드리프트로 제품을 운반하던 중 제품이 넘어지면서 깔림
- [8/30, 전남 영암군] 야적장에서 재해자가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힘
- [8/30, 전남 영암군] 야적장에서 재해자가 이동 중 지게차와 부딪힘
- [8/31, 전북 완주군] 페레미콘 재활용 설비 내부 청소 작업 중 스크류에 끼임

2023년도 제3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 기술지침 열람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KOSHA Guide

붙임

1. 2023년도 제3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공표문 1부.
2. 회의록 등 각 1부.
3.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전체목록(2023.8.24.) 1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5057&article.offset=0&articleLimit=10>